

5편 건축법규  
562페이지  
왼쪽 핵심PLUS 그림

국가직 · 지방직 · 서울시 대비

**[주차단위 구획 표시]**  
주차단위 구획은 벽색 실선으로 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점색실선으로 표시한다.

층계번호

14국가직 ⑦ 18국가직 ⑨

주차형식별 구획기준

층계번호

층계번호

11국가직 ⑩

**2 주차장 설비기준**

(1) 주차장의 형태

구분	형식	종류
자주식 주차장	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형식	시화식, 기계식, 건축용식
기계식 주차장	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	지화식, 건축용식

(2) 주차장의 주차구획[☆]

구분	주차장 종류	너비 × 길이
① 평행주차 형식	경형 자동차	1.2m × 4.5m 이상
	일반 주차장	2.0m × 6.0m 이상
	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	2.0m × 5.0m 이상
	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	1.0m × 2.3m 이상
② 평행주차 이외의 형식	경형 자동차	2.0m × 3.6m 이상
	일반주차장	2.5m × 5.0m 이상
	확장형 주차장	2.6m × 5.2m 이상
	장애인 전용주차장	3.3m × 5.0m 이상
	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	1.0m × 2.3m 이상

**3 노상주차장[☆]**

(1)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폐지

① 설치  
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

② 폐지

- ㉠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
- ㉡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
- ㉢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

562 · 제5편 건축법규